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3-902-2088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거주요건 | 재당첨제한 |
|---|--------|-----------|-------|
| 민영 | 비규제지역 | 서울특별시 거주자 | 없음 |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1년 ※ 본 청약의 경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0.07.29.)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공고일 현재 전매 가능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4.10.31.(목) | 2024.11.05.(화) | 2024.11.08.(금) | 2024.11.12.(화) | 2024.11.15.(금)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 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2023.06.30. 입주 개시)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추가선택품목에 대해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건본주택 운영이 종료 되었으므로,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263/main/index.do>)와 현장 방문 등으로 상품과 입지여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서 당첨된 동호수의 방문 점검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세대 방문시 상품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오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 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 | X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9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이며 18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는 건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 전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 및 현장과 주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홈페이지 :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263/main/index.do>) ※ 고객상담 대표 전화 : **033-902-2088**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시공되어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옵션의 추가 선택 또는 취소를 할 수 없으며, 시공된 추가 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체결 후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아파트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해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은 **039.0380**타입으로 발코니 확장이 불가한 주택입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0.31.(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66**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09.(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0000819**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4.11.05.(화) | 2024.11.08.(금) | 2024.11.12.(화) 10:00 ~ 16:00 | 2024.11.15.(금) 10:00 ~ 16:00 |
| 방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8 르웨스트건본주택 ☎ 033-902-2088) |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시 노원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 2020.07.29.)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5579호(2024.10.3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5-3번지 일대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10개동, 총 1,163세대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취소주택 1세대**
- 입주시기 : 최초 입주 개시일 2023년 06월 30일 (금회 공급분은 **2024.11.29.(금)**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완료 시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신혼 부부 | 계 |
| 2024930066 | 01 | 039.0380 | 39 | 39.0380 | 20.1740 | 59.2120 | 27.7710 | 86.9830 | 19.7123 | 1 | 1 | 1 |
| | 합 계 | | | | | | | | | 1 | 1 | 1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내역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약식표기 | 동 호 | 아파트 공급 금액 | | | | 추가선택품목(B) (시스템에어컨) | 추가부대경비(C) | 계(A+B+C)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소계(A) | | | |
| 039.0380 | 39 | 102-2202 | 140,414,000 | 195,586,000 | - | 336,000,000 | 4,000,000 | 6,462,760 | 346,462,760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시공이 완료되어 청약자는 추가선택품목 비용 납부조건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7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관리비,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주택은 최초입주일부터 재공급일까지의 기간이 있으므로 주택내부에 사용감이 있는 점을 반드시 양지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 및 해당 세대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이후 정당 당첨자에 한해 계약 전 세대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별도 통지 예정임)

■ 납부 일정 및 납부 방법

※ 분양대금은 계약금 20%, 잔금80%로 나누어 납부하며, 잔금 80%는 실입주일 또는 키불출일 중 빠른 날짜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잔금납부 마감일인 2024.11.29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요건에 따릅니다.

※ 아파트 공급 금액 및 추가부대경비와 추가선택품목의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계좌

| 구분 | 금액(원) | |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총액 | 계약금(20%) | 잔금(80%) | | | |
| | | 계약시 | 2024.11.29.까지 | | | |
| 아파트, 추가 부대 경비 | 342,462,760 | 68,490,000 | 273,972,760 | 농협 | 301-0270-5742-31 | 상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본 아파트는 이전고시와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해주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

| 구분 | 금액(원) | |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총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 계약시 | 2024.11.29.까지 | | |
| 추가 선택 품목 (시스템 에어컨 안방, 거실) | 4,000,000 | 400,000 | 3,600,000 | KB국민은행 | 465101-01-281729 | 롯데건설(주) |

■ 전자수입인지 구매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분실 등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구분(계약서 기재금액) | 총 납부 세액 | 계약자 부담 금액 | 공급자 부담 |
|--------------|----------------|-----------|---------|
| 아파트 분양 계약 | 1억 초과 ~ 10억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 수입인지 구매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공급

| 구분 | 내용 | |
|--------|---|---|
| 공급기준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 |
| | 구분 | 처리방법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 |
| 무주택 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 |

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구분 | 내용 | | | | | | | | |
|--|--|---|------------------|--------------|--------------|-----------------------|--------------|--------------|----|
| 대상자 |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p> <p>※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p>■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p> <p>■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p>■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p> | | | | | | | | |
| 비고 | <p>■ 소득기준</p> <p>- 소득 확인 시점</p> | | | | |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
| | 2024.10.31 |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
|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 | | | | | | |
| | 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소득 기준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이하 | ~9,806,313원 | ~11,547,854원 | ~12,285,099원 | ~13,388,595원 | ~14,492,090원 | ~15,595,586원 |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 소득 초과 자산 기준 |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보유 부동산 자산 총액이 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 | | | | | | |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 | | | | | | |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 | | | | | | |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 | | | | | | |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 | | | | | | |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 | | | | | | | | | | | |
|---|--------------------|--|--------|------------|------------|----|--------------------|---------------|------|----------------------------------|------|--|-----------------|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종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세정 시가표준액</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택 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 | | | | | | | | | | |
| | |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 | | | | | | | | | |
|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1.08.(금) ~ 2024.11.17(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문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11.08.(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이후 파기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에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필히 서류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당첨자 청약자격검증서류 제출 안내

| 구분 | 서류제출 일정 | 서류제출장소 |
|--------------|-------------------------------|---|
| 당첨자 서류 제출 | 2024.11.12.(화) 10:00~1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8 르웨스트건본주택) |
| 예비 당첨자 서류 제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건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0.31.]이후 발급 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1>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무주택서약서 | 본인 | • 겹본주택 비치 |
| | ○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본인 | • 겹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아파트 분양 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인터넷 발급분 불가)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생략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모바일 신분증 불가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 | ○ | ○ | | 피부양 직계존속 | •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가구원수 제외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2] 참조)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자격요건 확인서 | - |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 필수 함)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 |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신고사실 없음을 확인(전년도 기준)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주민센터 방문 전국통합발급요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제출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본인 및 세대원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 |
| 전세사기 피해자 | ○ | | 임대차계약서 낙찰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 본인 또는 세대원 |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매각허가결정서(경매)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공매) 사본 해당 임차주택, 원본 제출 |
| | | | |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 | 채권자 확인서류 | | -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인터넷 발급분 불가) | |
| | ○ |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모바일 신분증 불가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 | | 무주택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2>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계약체결 전 청약자격 검증 서류 제출일 내 제출)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②해당 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①,② 해당 직장 |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
| 자영업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원본) | ① 세무서 |

| | | | |
|--------------------|--|--|--|
| 자 | 신규사업자 등 |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④ 전년도 재무재표 | ①,② 등기소 ③ 세무서 ④ 해당 직장 |
|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간이지급명세서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프리랜서의 경우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추가 제출(해당 직장 직인 날인) |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건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
| 자산입증 서류목록 | *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조건 청약자에 한함 | 등기소 | |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하며 세대원 전원에 대해 각각 발급)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소유 부동산 확인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 | 소유 부동산의 금액 확인 | ①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상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②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택스, 위택스 |
| | 해당자 |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 | | |
|---|--|-----------------|
| |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전국통합발급요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 (인터넷발급은 전국단위안됨) |
| <p>-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p> <p>-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 | |

VII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구분 | 계약기간 | 장소 |
|---------------------------|---------------------------------|---|
| 계약 취소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 2024.11.15.(금) 10:00 ~ 1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8 르웨스트건본주택 ☎ 033-902-2088) |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 상기 계약체결 일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에 한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검수일 및 추첨, 계약체결 등 자세한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 입니다. (사업주체에서 별도 통보한 일정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건본주택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는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합니다.
- ※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 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 |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모바일 신분증 불가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본인 |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 | ○ |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본인 |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자격 확인서류 일체 | 본인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본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당첨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인터넷 발급분 불가)] |
| | ○ | |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모바일 신분증 불가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에 해당 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혼인 기간,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주택소유현황 등)의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③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당첨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①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②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③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계좌부활요청서"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작성 및 제출방법 등 개별 유선문의 바랍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주택이 공급되는 서울시 노원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납부 마감일인 2024.11.29.(마감일 전에 실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8 참고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을 소유하지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적용)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단독상속)와 상속이 아닌 증여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후 일부증여 등으로 |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일부 증여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11.19.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에 의거 주택의 공유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공유지분 5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 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적용) 청약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주민등록표에 등재)한 상태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세대원 전체가 이주할 필요는 없으며, 청약신청자만 이주하면 됨)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2호 다목의 경우 최초 등록기준지는 청약신청자의 본적지를 의미하며, 상속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적용) 개인주택사업자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해당업무분야에 주택판매나 분양목적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건설이 아닌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개인주택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적용)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적용) 20㎡ 이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적용)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청약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적용) 멸실의 경우에는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증빙(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합니다.
 8. 무허가건물(중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 (적용) 무허가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인정되고 연면적 200㎡ 미만 이거나 2층 이하인 건물에 한정합니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적용) 소형·저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서 주택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분양권가격은 계약서상의 공급가격으로 산정) 소형·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동명이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2호 이상 보유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적용)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미계약 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로 인정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미달 세대를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적용) 주택공급 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빙서류 등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며 주택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적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해당되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거래 신고한 취득가격이 기준, 2024년 취득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만 해당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②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됩니다.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③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며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습니다.)이 비수도권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시행사 | 시공사 |
|--------|----------------------------|---------------------------|
| 상호 | 상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롯데건설(주) |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3길 11, 3층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
| 법인등록번호 | 260271-0002546 | 110111-0014764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구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 및 전기통신감리 |
|----------------|----------------|--------------|--------------|
| 회사명 |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 (주)한국나이스기술단 | (주)아이비엔지니어링 |
| 감리금액(VAT 포함금액) | 3,482,153,400원 | 701,642,830원 | 731,500,000원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 구분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
| 고기밀창호 | 적용 | 외기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
| 고효율 자재 | 적용 |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사용 난방, 급수 및 급수펌포는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 각1개소 설치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해당 세대현관에 1개소 설치 |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칙」및「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구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실별온도 조절장치 | 적용 |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
| 절수설비 |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 규칙」제1조의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1층 2.7m(일부구간 2.3m), 그 외 지하층 2.3m | 2.7m |

9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입주자 설계고지사항
 청약 신청 및 분양계약 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설계 고지사항, 도면, 각종 홍보물들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설 계 공 지 내 용 |
|------------|--|--|
| 주변환경 관련 | 기부채납 대지 및 시설 | 단지 인근 공원 및 공공공지, 도로, 체육시설은 본 사업지의 기부채납으로 단지내 소유대지 및 건물이 아니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제반 계획과 동선, 식재, 레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부채납 시설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단지 주변 도로 | 단지 중앙으로 2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1BL(서측)과 2BL(동측)으로 구분됩니다. 단지 서측 30m 도로 및 상부 고가철도(지하철 4호선)가 있으며,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이 설치됩니다. 방음벽은 1BL 단지 서측 도로변으로 높이 13m, 길이 129m로 계획되어 있으며, 1BL 단지 남측 도로변으로는 높이 15m, 길이 5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BL 남측으로 15m 도로가, 2BL 북측 10m 도로 및 동측 7m 도로가 계획되나,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공공보행통로 | 1BL 단지 북측 일부 및 2BL 단지 중앙으로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며, 이는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입주자측에 관리비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1BL 북측 공공보행통로는 상계 5구역의 사업 진행에 따라 공공보행통로의 공사완료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지상철도 등 | 단지 서측에 인접하여 운행중인 지하철의 구조물에 매우 근접하여 있으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등)를 상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과 환경권 침해를 사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서측 상부 고가철도(지하철 4호선)로 인하여 1BL 세대 (특히 인접한 102, 103, 104동) 에 소음 및 진동,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가철도 하부 지상에는 차로 및 보행로가, 지하에는 하천 암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 | 인접 사업지 | 1BL 북측에 위치한 상계 5구역의 사업 진행에 따라 도로 폭, 횡단보도 위치 및 수량 등 제반 교통계획이 변경되거나, 신축 건물들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들의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와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인근 단지 | 1BL 서측에는 상계 4구역 신축 아파트(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최고 28층)가 있으며, 해당 건물들로 인하여 1BL의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BL 남측 상계 불암 대림아파트(최고 23층)와 북측 동아 불암 아파트(최고 22층)이 단지에 인접해 있으며, 해당 건물들로 인하여 2BL의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구역경계 | 대지경계선 외부 레벨과 당 단지의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 | 분양홍보물 (모형, 카달로그, 각종 광고지)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커뮤니티모형 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 공동시설 입체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인허가 | 1/2BL 분리단지 | 당 사업지는 상계 재정비촉진구역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단지 중앙 20m 도로로 분리된 2개의 블록으로 계획된 단지입니다. (서측 : 1블럭, 동측 : 2블럭) 2개의 블록은 하나의 단지로 인허가 진행하였으며, 각 블록은 각종 면적 및 설계 여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계약전 고지사항 및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법적 기준 시점 | 당 아파트는 2013년 7월 건축심의, 2014년 11월 최초 사업시행인가 완료로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
| | 경미한 설계변경 | 아파트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하지 않습니다. |
| | 좋은빛 심의 | 분양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서울시 좋은빛 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이동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2동 옥상층, 106동 옥상층, 108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1층 헬룸#1(101동) / 지하1층 헬룸#5(105동) / 지하2층 헬룸#1(101동) / 지하2층 헬룸#5(105동) / 지하3층 헬룸#1(101동)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센터)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은 상품성 개선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CG로 설계변경 예정이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없으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세대창고 | 세대창고는 현재 전 세대에 대해서 설계 및 분양가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세대창고 등 설계변경이 계획되어 있으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일부 또는 미적용 될 수 있으며, 적용시 유상제공 될 수 있습니다. |
| 공사 중 설계변경 | 단지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단위세대 | 세대 간섭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외관 디자인 | 본공사 시, 시공여건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근, 외부시설물(난간 디테일,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디자인(식재계획, 조경 바닥 디자인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또는 PC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 | 동 출입구 | 각 동별 독립형 출입구 혹은 필로티형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계획됨에 따라 인접 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 저층부 마감 | 주동 동출입구 및 세대 저층부 3개층(필로티 외벽면은 포함, 필로티 내벽면과 계단실, 공용홀은 제외)은 석재마감이 적용되며, 커뮤니티시설 외부 입면은 석재마감 및 |

| | |
|-------------------|--|
| | 석재뿔칠 등 혼합마감이 적용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석재마감 및 석재뿔칠 혼합 적용될 예정입니다. |
| 저층 세대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진출입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야외운동공간,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최상층 세대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집광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됩니다.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옥상 |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 등 눈부심과 풍음 등이 인접한 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자연채광시스템 단지 관리비 | 101, 109동 옥상에는 102동 저층 세대를 위하여, 107동 옥상에는 105동 저층 세대를 위한 자연채광시스템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무선 AP 및 홈네트워킹 설비, 영구배수시설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 |
| 쓰레기 분리수거장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은 동출입구 인근에 총 6개소가 설치되며, 1개동 개별형과 2개동 통합형으로 계획되어 사용공간과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개동 개별형 2개소 : 101, 104동) (2개동 통합형 4개소 : 102/103동, 105/108동, 106/107동, 109/110동)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은 해당시설 인근에 총 2개소 설치됩니다. (1BL 1개소 : 101동 남측 지상주차장 인근, 2BL 1개소 : 105동과 108동 사이)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장 크기는 수용대상의 규모, 내부 용기 배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자전거보관소 | 각동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에 인접한 별도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 조망권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용부 | 계단실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최상층 1개소와 최하층 1개소, 중간층 5개층마다(중간층 설치개수는 동별/호수별 층수에 따라 상이함)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고 나머지 층은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됩니다. 다만, 그 위치, 크기 등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창호들 중 최소 1개소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 이사 여건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 형태(유리난간), 입면 장식, 돌출 발코니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사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라인에 이사가 입주자 이동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외부 시설물 | 단지 내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티하우스 시설물은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파고라형 시설물로 별도의 냉난방기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지하 설비공간 | 각동 지하 일부동 지하층에는 설비/전기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주동의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01동 지하 : 근린생활시설용 정화조/펌프실/물탱크실, 아파트용 빗물저류조/정화조/발전기실/전기실, 사우나/지열 기계실 104동 지하 : 아파트용 펌프실/물탱크실 105동 지하 : 근린생활시설용 정화조/펌프실/물탱크실/기계실, 사우나/지열 기계실 109, 110동 지하 : 아파트용 정화조/빗물저류조/펌프실/물탱크실/발전기실/전기실 101, 108동 옥상층에 아파트 및 근생 정화조 배기탑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외부 엘리베이터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접근을 위한 외부 엘리베이터 1개소와 외부 계단 1개소가 각 블록별 설치됩니다. (1BL : 101동, 2BL : 105동) 이로 인해 인접한 주동의 세대는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필로티 | 일부 주동 1층 세대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1층 4,5호, 102동 1층 1~3호, 105동 1층 1~4호, 106동 1층 4,5호, 107동 1층 4호, 109동 1층 3호) |
| 문주 | 문주는 블록별 차량 진출입구에 1개소씩, 총 2개소 설치됩니다. 문주 설치로 인하여 101동 4/5호 세대, 104동 3호세대, 106동 4/5/6호 세대의 저층부는 조망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출입구 | 1블록은 남측 주출입구 1개소(차량 및 보행자 출입 가능), 동측과 북측에 보행자용 출입구가 계획됩니다. 2블록은 남측 주출입구 1개소(차량 및 보행자 출입 가능), 서측과 북측, 동측에 보행자용 출입구가 계획됩니다. |
| 서비스차량 동선 | 차량의 높이가 2.3m 이상인 택배차, 비상차량, 쓰레기수거차량 등의 차량은 지하 주차장 진입이 불가하며, 사용자 지상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블록별 세대규모 및 주차장 효율, 설계여건 등에 따라 블록별 입주자의 주차장 이용층수가 상이하나, 세대당 주차대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블록 101/102/103/104동 : 지하 3개층 이용, 2블록 105/106/107/108/109/110동 : 지하 2개층 이용) 주차장 진출입구는 경사로 진입 형태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진출입시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블록 : 101동 및 104동 사이, 2블록 : 106동 남측) 1블록 주차장 진출입구는 계획상 외부도로와 인접하게 위치하여 방문객 차량 대기시 동선이 다소 혼잡해질 수 있습니다. |

| | |
|---------|--|
| | <p>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과정에서 관계기관협의에 의해 본 공사시 내·외부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재료,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에는 주차장 환기를 위한 별도의 환풍이 설치되며, 급배기 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최하층 주차장 내 일반 및 영구배수 집수정이 설치되며, 집수정 배수시 펌프 소음 및 진동이 주차장 및 인접 세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노출 시공되어 인근 주차구역 주차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공사시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에는 부대시설 및 엘리베이터홀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환 가동에 따른 바람,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부대복리시설 | <p>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p> <p>관리사무소는 103동과 106동 하부 지상 1층에 각 1개소씩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샤워/탈의실 등)이 101동과 105동 하부 지하 1층에 각 1개소씩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의 진출입을 위한 외부 엘리베이터와 채광확보를 위한 선근 및 외부 계단이 설치됩니다.</p> <p>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어린이집과 경로당은 104동과 108동 지상 1층에 각 1개소씩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인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p> <p>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p> <p>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 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됩니다.</p> <p>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이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는 지상 인근 공간에, 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실내 공간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 보도 및 조경공간,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팬가동에 따른 바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p> <p>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경비실은 블록별 차량출입구에 인접하여 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주의 디자인 개선에 따라 위치 이동 및 건축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인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 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p> |
| 근린생활시설 | <p>101동의 지상 1층 및 105동의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p> <p>이와 인접한 주동의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p> <p>해당 시설의 전용 주차장과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인근 지상에 설치됩니다.</p> <p>근린생활시설에는 해당 시설 지붕 또는 인접한 외부공간에 실외기가 계획되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환 가동에 따른 바람 등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p> <p>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매장 후면에 화장실(101동 및 105동) 및 지상 2층 접근을 위한 실내계단 및 엘리베이터(105동)이 계획되어 단지 내측으로 사인물 계획 및 매장 이용자 동선 이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인접한 동들의 저층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빛 공해, 동선 간섭,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상 1층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진출입 동선 구간이 공동주택과 공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동 후면에는 정화조 청소용 배관이 설치되어 정화조 청소차의 출입 및 작업으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그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무인택배보관소 | <p>무인택배보관소는 각 주동출입구 1층 로비공간에 1개소씩 설치되며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로비공간 내에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101동 | <p>단지 서측에 인접하여 운행중인 지하철의 구조물에 매우 근접하여 있으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등)를 상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과 환경권 침해를 사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01동 남측에 공원과 단지 차량진출입구 문주 지상주차장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북측에 공공보행통로 서측에 조경공간과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층 설비공간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이 건물과 일체형으로 계획되며, 인접한 내외부 도로들과 문주 등 각종 시설들로 인하여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동선 혼잡, 차량 전조등 눈부심,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 | |
|------|---|
| |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상층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2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 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남측 근린생활시설용 1개소, 1/2호 동출입구 인근 공동주택용 1개소)</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5호용 엘리베이터 2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동 후면에는 정화조 청소용 배관이 설치되어 정화조 청소차의 출입 및 작업으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 102동 | <p>단지 서측에 인접하여 운행중인 지하철의 구조물에 매우 근접하여 있으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등)를 상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과 환경권 침해를 사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주동 서측에는 폭 30m 도로 및 상부 고가철도(지하철 4호선)가 있으며,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이 설치됩니다.</p> <p>방음벽은 1BL 단지 서측 도로변으로 높이 13m, 길이 129m로 계획되어 있으며, 1BL 단지 남측 도로변으로는 높이 15m, 길이 5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p> <p>이로 인하여 해당동의 저층부 세대는 채광 및 조망, 통풍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2동은 임대세대와 일반분양세대의 전용 및 공용공간이 일체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102,103동 통합형),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p> <p>1~7호용 엘리베이터 3대, 8,9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
| 103동 | <p>단지 서측에 인접하여 운행중인 지하철의 구조물에 매우 근접하여 있으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등)를 상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과 환경권 침해를 사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서측에는 폭 30m 도로 및 상부 고가철도(지하철 4호선)가 있으며,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이 설치됩니다.</p> <p>방음벽은 1BL 단지 서측 도로변으로 높이 13m, 길이 129m로 계획되어 있으며, 1BL 단지 남측 도로변으로는 높이 15m, 길이 5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p> <p>이로 인하여 해당동의 저층부 세대는 채광 및 조망, 통풍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102,103동 통합형), 배치 여건상 타동 대비 거리가 먼 위치에 계획됩니다.</p> <p>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
| 104동 | <p>단지 서측에 인접하여 운행중인 지하철의 구조물에 매우 근접하여 있으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등)를 상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과 환경권 침해를 사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서측에는 폭 30m 도로 및 상부 고가철도(지하철 4호선)가 있으며,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이 설치됩니다.</p> <p>방음벽은 1BL 단지 서측 도로변으로 높이 13m, 길이 129m로 계획되어 있으며, 1BL 단지 남측 도로변으로는 높이 15m, 길이 5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p> <p>이로 인하여 해당동의 저층부 세대는 채광 및 조망, 통풍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104동 단독형)</p>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
| 105동 | <p>지하층 설비공간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이 건물과 일체형으로 계획되며, 남측에 진입도로, 차량진출입구, 문주, 지상 주차장이, 동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조경 휴게공간이, 서측에 외부도로가, 북측에 공공보행통로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진동, 동선 혼잡, 차량 전 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2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북동측 상가용 1개소 및 공동주택 105동 및 108동 통합형 1개소)</p>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 106동 | <p>지상 1층에 관리사무소 및 필로티가 계획되며, 남측에 진입도로, 차량진출입구, 문주가, 북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조경 휴게공간이, 서측에 외부도로 및 지상 주차장, 맘스스테이션으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진동, 동선 혼잡, 차량 전 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공동주택 106동 및 107동 통합형 1개소)</p>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p> |

| | | |
|------|------------|--|
| | | <p>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 5.6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
| | 107동 | <p>지상 1층에 필로티가 계획되며, 남측에 단지 내 보행로가, 동측에 외부도로가, 서측에 어린이놀이터, 북측에 공공보행통로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동 선 혼잡,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공동주택 106동 및 107동 통합형 1개소)</p>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
| | 108동 | <p>지상 1층 경로당 및 어린이집이 계획되며, 북측에 공공보행통로, 서측에 근린생활시설(1~2층)이, 동측에 외부 도로가, 남측 및 서측에 어린이놀이터, 조경공간 및 휴게시설들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진동, 동선 혼잡,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공동주택 105동 및 108동 통합형 1개소)</p>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
| | 109동 | <p>지상 1층에 필로티가 계획되며, 남측에 단지 내 보행로가, 서측에 외부도로 및 횡단보도가, 동측에 어린이놀이터, 조경공간 및 휴게시설들이, 북측에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도로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진동, 동선 혼잡,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공동주택 109동 및 110동 통합형 1개소)</p>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
| | 110동 | <p>지하에 설비공간이,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공간, 휴게시설들이, 서측에 주민운동시설이, 동측과 북측에 외부 도로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동선 혼잡,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공동주택 109동 및 110동 통합형 1개소)</p> <p>1,2,3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동 후면에는 정화조 청소용 배관이 설치되어 정화조 청소차의 출입 및 작업으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단위세대 | 건본주택 및 홍보물 | <p>사이버 건본주택은 59B, 84A형으로 제공되며,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건본 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 주방가구 배치 및 색상/ 타일, 도배지 무늬패턴/ 알파룸 유무 등은 동일평형이 라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건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p> <p>사이버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홈페이지에 사용된 단지 이미지와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p> <p>세대내 대피공간이 설치되는 경우, 출입도어에는 법규에 따라 비상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도어클로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p> <p>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건본주택 내 부착되어있는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된 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만든것으로 실제 시공 제품과 무관합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
|--|--|
| | <p>사이버 견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천장형 냉난방기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본 공사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p> |
| 84B / 84C | 해당 타입들은 같은 열에서 층수에 따라 구분되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동호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감재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사이버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사이버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 | 공장생산 자재(인조대리석류, 타일, 벽지, 시트, 마루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 공통사항 | 단위세대는 대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예 : 거실 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 아트월타일 마감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아트월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됩니다. |
| |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견본주택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 |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당사가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 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ज्ञ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 안방 앞 발코니, 보조주방,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여도 비난방, 비단열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 마감이 없습니다. | |
| 당 단지의 세대 천정고는 2.3m (욕실 2.2m)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층 세대만 특화계획이 반영되어 천정고가 2.5m (욕실 2.2m)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창호의 크기는 1층 세대도 기준층 세대와 동일합니다. | |
| 제공품목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카탈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각 세대 타입별 제공되는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상판포함)의 사이즈 및 내부구성, 형태, ACC 등은 서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공사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 | 21㎡, 39㎡ 형의 경우 확장형 선택이 없습니다. |
|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p>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습니다.</p> <p>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p>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 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창호공사 | <p>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조 사양은 인허가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창호의 프레임은 향후 외관 개선에 따라 도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p> <p>사이버 견본주택에 시공된 내/외부창호의 개폐방향 및 디자인은 편의성 고려하여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내 창조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조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 <p>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전동 루버창은 천정형 에어컨 유상옵션시 제공하는 품목으로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미 선택시 일반 수동형 루버창이 설치되며,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하며, 루버외부에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됩니다.</p> <p>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세대 전면에 위치한 거실 및 침실의 외부 창조는 분할형 이중창이, 안방의 외부 창조는 분할형 단창이 설치되며, 하부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안방 분합창은 일반 단창이 설치됩니다. 세대 후면에 위치한 주방 및 드레스룸 등의 외부 창조는 일반 이중창이, 보조주방의 외부 창조는 일반 단창이 설치되며, 하부는 콘크리트 난간으로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p> <p>비확장형(기본형)을 선택할 경우, 세대 전면에 위치한 거실/안방/침실의 외부 창조는 분할형 단창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세대 후면에 위치한 주방/보조주방/드레스룸의 분합창은 일반 이중창이, 외부 창조는 일반 단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하부는 콘크리트 난간으로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p> <p>발코니확장 유상옵션을 선택할 경우, 거실 및 침실의 이중창 중 내부측 창조에만 L/S (Lift & Sliding)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안방의 분합창 및 외부창 제외)</p> <p>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조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 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 <p>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개수대, 가스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 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닙니다.</p> <p>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p> <p>21/39㎡형의 경우 평형에 맞춘 공간계획상 식탁전등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일부평형에 따라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21, 39, 43㎡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p> <p>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발코니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환기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본 공사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따른 쿡탑 상부장 사이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일부 발코니에 우수입상배관 및 발코니배수배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이 설치됩니다.</p> <p>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안방, 거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세대환기용 환기장비가 안방발코니나 주방발코니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장비를 가리기 위한 천정 마감으로 인해 높이가 낮아 질 수 있습니다.</p> <p>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p> <p>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캐슬스마트홈' 서비스는 무상 지원됩니다.</p> <p>스마트홈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스피커는 별도 구매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p> <p>도시가스 배관은 각동 외부 벽면에 노출 시공됩니다.</p> <p>세대 난방용 보일러 및 환기용 전열교환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p> | |
| | <p>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p> <p>21/39㎡형의 경우 평형에 맞춘 공간계획상 식탁전등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일부평형에 따라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21, 39, 43㎡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p> <p>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발코니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환기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본 공사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따른 쿡탑 상부장 사이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일부 발코니에 우수입상배관 및 발코니배수배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이 설치됩니다.</p> <p>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안방, 거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세대환기용 환기장비가 안방발코니나 주방발코니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장비를 가리기 위한 천정 마감으로 인해 높이가 낮아 질 수 있습니다.</p> <p>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p> <p>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캐슬스마트홈' 서비스는 무상 지원됩니다.</p> <p>스마트홈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스피커는 별도 구매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p> <p>도시가스 배관은 각동 외부 벽면에 노출 시공됩니다.</p> <p>세대 난방용 보일러 및 환기용 전열교환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p> | |
| | <p>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욕실, 현관 등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다용도실 세탁기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보조주방가구 형태는 세탁기/건조기 사용성 증진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건조기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다용도실 내부 시스템선반의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사이버 견본주택, 카달로그, 분양홍보물(모형, CG)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p> | |
| | 발코니 및 실외기실 | <p>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욕실, 현관 등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다용도실 세탁기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보조주방가구 형태는 세탁기/건조기 사용성 증진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건조기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다용도실 내부 시스템선반의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사이버 견본주택, 카달로그, 분양홍보물(모형, CG)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p> |
| | | <p>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욕실, 현관 등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다용도실 세탁기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보조주방가구 형태는 세탁기/건조기 사용성 증진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건조기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다용도실 내부 시스템선반의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사이버 견본주택, 카달로그, 분양홍보물(모형, CG)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p> |

| | | |
|--|----------|--|
| | |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외기실에 발코니 배수용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유상옵션 | 공통 | 사이버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사이버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재, 마감형태 및 사양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 | | 상기 별도 계약 품목 중 일부는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 | | 추가 선택 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탈로그 기준으로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불가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사이버 견본 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추가 선택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 및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쿨러, 환기디퓨저, 천정몰딩 및 커튼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가구 및 마감재 |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미드웨이션반 옵션 미선택시 해당위치에 벽타일(300*600)이 시공되며 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하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모형 및 카탈로그를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안방 슬라이딩 불박이장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측면의 불박이장, 드레스룸, 파우더장, 가구설치용 날개벽 등의 사이즈 및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현관 중문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신발장 날개벽, 천정몰딩 및 걸레받이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 디딤판 사이즈 및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가전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적용품목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쿡탑 옵션 또는 후드일체형 인덕션 유상옵션 미선택시에는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 | | 추가 선택 가전제품의 경우, 용량, 효율, 에너지 등급 등의 기기의 성능 면에서 입주 시점의 최신제품에 비하여 사양, 사용성 등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됩니다. | | |

▣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 안내

- 분양사무실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8 르웨스트견본주택
- 홈페이지 :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263/main/index.do>
- 분양문의 : 033-902-2088
- 주요일정

| | | | | |
|---|--|---|--|--|
| 특별공급: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2024.11.05.(화)</div> | 당첨자 발표일: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2024.11.08.(금)</div> | 당첨자 서류 접수 :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2024.11.12.(화) 10:00 ~ 16:00</div> | 당첨자 세대 방문 점검 :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서류접수 시 개별안내 예정</div> | 계약일시 :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2024.11.15.(금) 10:00 ~ 16:00</div> |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제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당첨 후 세대방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